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의안 번호	3368
----------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 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II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¹⁾
-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제89조²⁾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가족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³⁾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해구호법」 제14조⁵⁾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⁶⁾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①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⁷⁾와 개별 조례에 근거한 ②자체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설치 근거에 대한 예외 없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⁸⁾

- '26년도에 서울시가 운용 계획하는 21개 기금 29개 계정의 규모는 3조 8,274억 600만원으로 '25년도(4조 1,789억 1,300만원)보다 △8.4%, △3,515억 7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1〉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계획안)	2025년도 ^{주1)}	증 감 액	증 감 률
총 운 용 규 모	3,827,406	4,178,913	△351,507	△8.4
기 금 사 업 (용 자 사 업 포 함)	893,325	668,162	225,162	33.7
재 무 활 동 (예탁, 예치, 예수금상환 등)	2,933,546	3,510,292	△576,746	△16.4
행 정 운 영 경 비	534	458	75	16.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4425 ('25.11.7.)

주1) 당초계획 기준,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이하 동일)

-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월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⁹⁾에 따른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25년도보다 1개 기금이 증가한 21개 기금, 29개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9)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① 의안번호 : 3041 ② 제출 : '25. 8.11. ③ 의결 : '25. 9.12. (가결)

〈표 3-2A〉 기금현황 (21개 기금, 29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1992	'30.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2001	'30.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에 대한 상환채 원을 적립하고 채무규 모를 감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용 자 계 정	1965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2018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투자지원	경제실 창업정책과
5	중소기업육성기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2012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6	식품진흥기금	1989	영구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7	기후대응기금	2007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생성장 기본법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촉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8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9	양성평등가족기금	1996	'27.12.31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1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996	영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표 3-2B〉 기금현황 (21개 기금, 29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3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1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9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지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영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복지실 자활지원과
1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주택실 주택정책과
15	체육진흥기금	2000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1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영구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복지실 복지정책과
18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004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19	지역교류협력기금	2007	'28.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행정국 대외협력과
20	국제개발협력기금	2005	'28.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표 3-2C〉 기금현황 (21개 기금, 29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21	도시재생기금	2017	'26.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2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급 지원계정	2020	'29.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위기 시 관광업계 지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3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 플라자계정	2020	'29.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비용 적립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021	'30.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행정국 인력개발과
25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21	'30.12.31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의 적립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6	고향사랑기금	2023	영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과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7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2014	'29.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용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28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2022	'27.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화본부 박물관과
29	주택진흥기금	2025	'30.12.31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	주택실 주택정책과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5

(2) 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¹⁰⁾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가 운용중인 21개 기금, 29개 계정 중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③**공무원주거안정기금**, ④**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존속기한을 '25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중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A〉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계정명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 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30.12. 3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30.12. 3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030.12. 31.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30.12. 3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6년도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B〉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계정명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 규정
도 시 재 생 기 금	2026.12. 3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용 자 계 정	2027.12. 3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투 자 계 정	2027.12. 3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2027.12. 3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식 품 진 흥 기 금	해당없음	식품위생법 제89조
기 후 대 응 기 금	2027.12. 31.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도로굴착복구기금	2027.12. 3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2조의2
양성평등 가족 기금	2027.12. 31.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의2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 민 지 원 기 금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 회 복 지 기 금 노 인 복 지 계 정	2027.12.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의2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027.12.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의2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2027.12.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의2
체 육 진 흥 기 금	2027.12. 3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해당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해당없음	재해구호법 제14조

〈표 3-3C〉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계정명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 규정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027.12. 3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지역교류협력기금	2028.12. 31.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국제개발협력기금	2028.12. 31.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지원계정	2029.12. 3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관광진흥기금 서울플라자계정	2029.12. 3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고향사랑기금	해당없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2029.12. 3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4조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2027.12. 31.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주택진흥기금	2030.12. 31.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3) 기금조성규모

- 21개 기금, 29개 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10조 4,744억 3,6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액(9조 2,724억 7,400만원)보다 12.9%, 1조 2,019억 6,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계획한 것임

〈표 3-4〉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수 입	지 출			
합계	9,272,474	2,558,222	1,356,259	10,474,436	1,201,962	1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713,328	1,309,124	264,587	8,757,865	1,044,536	13.5
통합계정	6,999,913	1,288,143	189,187	8,098,869	1,098,955	15.7
재정안정화계정	713,415	20,980	75,399	658,996	△54,419	△7.6
중소기업육성기금	148,784	272,846	351,267	70,363	△78,420	△52.7
융자계정	76,258	204,682	276,218	4,722	△71,536	△93.8
투자계정	11,452	56,063	66,975	539	△10,912	△95.2
사회적경제계정	61,074	12,100	8,072	65,101	4,027	6.6
식품진흥기금	62,331	8,432	3,803	66,960	4,628	7.4
기후대응기금	20,791	17,484	29,662	8,612	△12,178	△58.5
도로굴착복구기금	20,418	47,289	40,347	27,360	6,941	34
양성평등가족기금	25,767	1,251	944	26,074	306	1.1
자원회수시설주변환경지역주민지원기금	10,077	35,171	35,836	9,412	△665	△6.6
사회복지기금	52,072	8,318	15,742	44,648	△7,423	△14.2
노인복지계정	12,109	444	449	12,104	△5	△0.04
장애인복지계정	16,630	1,971	3,395	15,206	△1,423	△8.5
자활계정	9,026	621	1,002	8,645	△381	△4.2
주거지원계정	14,306	5,281	10,895	8,692	△5,614	△39.2
체육진흥기금	55,097	9,303	9,749	54,651	△446	△0.8
재난관리기금	960,452	491,648	388,591	1,063,509	103,057	10.7
재난계정	834,984	430,626	382,492	883,118	48,134	5.7
구호계정	125,468	61,021	6,098	180,390	54,922	43.7
남부고령형맞춤형통일기반조성기금	32,478	1,163	1,681	31,959	△518	△1.6
지역교류협력기금	1,224	6,877	7,119	982	△242	△19.8
국제개발협력기금	2,950	4,558	3,758	3,750	800	27.1
도시재생기금	76,072	34,441	8,654	101,859	25,787	33.9
관광진흥기금	7,245	234	355	7,125	△120	△1.6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347	41	355	1,033	△313	△23.3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898	193	0	6,092	193	3.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082	20,217	19,007	7,292	1,210	19.9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5,913	13,000	0	88,913	13,000	17.1
고향사랑기금	581	333	186	728	146	25.1
공공시설등설치기금	740	83,598	0	84,338	83,598	11,294.2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63	1,042	1,000	105	42	66.8
주택진흥기금	0	191,886	173,962	17,923	17,923	-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9~10) 재구성

(4) 기금운용계획

- '26년도에는 총 3조 8,274억 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5년도 운용계획(5조 5,488억 2,100만원)보다 △31.0%, △1조 7,214억 1,500만원 감소한 것임
- '25년도와 비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등이 기금의 운용규모 증·감이 큰 것으로 검토되는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25년도(2조 7,836억 3,700만원)보다 △43.4%, △1조 2,096억 4,300만원 감소한 1조 5,739억 9,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고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투자계정, 사회적경제계정)은 '25년도(5,328억 6,100만원)보다 △28.3%, △1,512억 3,000만원 감소한 3,816억 3,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은 '25년도 운용규모(1조 5,934억 5,600만원)보다 △30.8%, △4,913억 5,500만원 감소한 1조 1,021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도시재생기금**은 '25년도(1,645억 9,800만원)보다 △32.9%, △540억 8,400만원 감소한 1,105억 1,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25년도(330억 6,000만원)보다 155.1%, 512억 7,800만원 증가한 843억 3,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5〉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6년도(안)	2025년도	증감액	증감률
합계	3,827,406	5,548,821	△1,721,415	△3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73,994	2,783,637	△1,209,643	△43.4
통합계정	1,423,998	1,949,596	△525,597	△27.0
재정안정화계정	149,996	834,041	△684,045	△82.0
중소기업육성기금	381,631	532,861	△151,230	△28.3
융자계정	280,940	377,487	△96,546	△25.6
투자계정	67,515	112,138	△44,623	△39.8
사회적경제계정	33,174	43,235	△10,060	△23.3
식품진흥기금	18,764	23,682	△4,917	△20.8
기후대응기금	38,275	49,572	△11,296	△22.8
도로굴착복구기금	67,707	82,571	△14,864	△18.0
양성평등가족기금	3,818	4,018	△199	△5.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249	42,190	1,059	2.5
사회복지기금	30,081	59,997	△29,915	△49.8
노인복지계정	1,064	1,162	△98	△8.5
장애인복지계정	4,201	9,645	△5,443	△56.4
자활계정	5,227	5,633	△405	△7.2
주거지원계정	19,587	28,587	△8,999	△31.5
체육진흥기금	12,078	14,968	△2,889	△19.3
재난관리기금	1,102,100	1,593,456	△491,355	△30.8
재난계정	915,610	1,392,324	△476,714	△34.2
구호계정	186,489	201,131	△14,641	△7.3
남북교류협력기금	33,641	34,415	△774	△2.2
지역교류협력기금	8,102	8,752	△650	△7.4
국제개발협력기금	7,508	7,911	△402	△5.1
도시재생기금	110,513	164,598	△54,084	△32.9
관광진흥기금	2,480	2,890	△410	△14.2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388	1,992	△603	△30.3
서울관광플라자계정	1,092	898	193	21.6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6,299	28,089	△1,789	△6.4
하수도사업회전기금	88,913	95,123	△6,210	△6.5
고향사랑기금	914	921	△6	△0.7
공공시설등설치기금	84,338	33,060	51,278	155.1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1,105	1,071	34	3.2
주택진흥기금	191,886	0	191,886	순증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4425 ('25.11. 7)

- '26년도 기금운용규모(3조 8,274억 600만원)가 '25년도 기금운용규모(5조 5,488억 2,100만원)보다 감액편성(\triangle 31.0%, \triangle 1조 7,214억 1,500만원)된 것은 기금의 수입계획이 감편성된 것이 1차적 요인이나, 기금별 당해연도 예치금 규모를 실제 예치금 적립액으로 현행화 시키지 못한 규모만큼 다음연도 수입계획이 감소되는 것이 2차적 요인으로 사료되는 바,
- 기금별 예치금 ①지출계획액과 ②실제적립액을 검토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지출계획액 대비 163.0%, 2,10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응자계정**(지출계획액 대비 86.8%, 662억 5,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지출계획액 대비 458.1%, 524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지출계획액 대비 11.1%, 537억 8,200만원) 등은 ①지출계획액 보다 ②실제적립액이 증가하여 향후 '2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시점에는 예치금 초과적립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지출계획액 대비 \triangle 25.2%, \triangle 266억 5,200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지출계획액 대비 \triangle 21.3%, \triangle 12억 9,600만원), **고향사랑기금**(지출계획액 대비 \triangle 19.6%, \triangle 1억 1,400만원) 등은 예치금 ①지출계획액보다 ②실제적립액이 감소하여 '2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시점에 예치금 회수 수입에서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당해 연도말 예치금 예상잔액 즉, 실제 통장잔고와 예치금 ①지출계획을 일치시킨 이후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로 수입계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의 예치금 지출계획액을 '26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로 단순히 직결시킨 결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¹¹⁾과 서울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¹²⁾ 그리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의 경우에도¹³⁾ ‘다음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 즉, 실제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는 직전년도 지출계획중 예치금 ②실제 잔액이 아닌 ①지출계획액을 적용한 결과로 사료됨
 - 기금의 수입·지출을 계획함에 있어 실제 잔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계획과 실제 적립액(여유재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여 기금의 지출계획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시 예치금 회수 수입이 계획보다 과다 혹은 과소 발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25년도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 하였으나, '26년도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을 하지 않는 사업은 수입·지출계획에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¹⁴⁾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이 비교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선도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

11)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5. 7), p.307

1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5. 7), p.242

1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3820 ('23. 9.20)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질의회신”

14)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5. 7), p.298

〈표 3-6〉 '26년도 기금별 예치금 지출계획 대비 실제 적립 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예치금 지출계획액(A)	예치금 실제 적립액(B)	차액 (B-A)	'26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합계	1,234,964	1,771,725	536,761	1,234,9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5,635	78,983	△26,652	105,635
재정안정화계정 ^{주 1)}	129,015	339,315	210,300	129,01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76,258	142,514	66,256	76,258
투자계정	11,452	63,922	52,470	11,452
사회적경제계정	21,074	31,040	9,966	21,074
식품진흥기금	10,332	18,800	8,468	10,332
기후대응기금	16,791	34,733	17,942	16,791
도로굴착복구기금	20,418	51,292	30,874	20,418
양성평등가족기금	2,567	2,687	120	2,56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자역주민지원기금	8,078	9,286	1,208	8,078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20	631	11	620
장애인복지계정	2,230	7,923	5,693	2,230
자활계정	4,606	4,692	86	4,606
주거지원계정	14,307	17,255	2,948	14,307
체육진흥기금	2,775	5,212	2,437	2,77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84,984	538,766	53,782	484,984
구호계정	125,468	138,016	12,548	125,468
남북교류협력문화통일기본조성기금	32,478	33,096	618	32,478
지역교류협력기금	1,225	1,787	562	1,225
국제개발협력기금	2,950	5,450	2,500	2,950
도시재생기금	76,072	110,502	34,430	76,072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347	1,541	194	1,347
서울관광플라자계정	898	823	△75	898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082	4,786	△1,296	6,082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5,914	94,904	18,990	75,914
고향사랑기금	582	468	△114	582
공공시설등설치기금	740	33,109	32,369	740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63	193	130	63
주택진흥기금 ^{주 2)}	-	-	-	-

주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① 의안번호 : 3331 ② 제출 : '25.10.18. ③ 회부 : '25.10.23.

주2) '25. 9월 신설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4569 ('25.11.11.) “서울특별시 기금 계정별 예치금 현황”

2. 기금별 검토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¹⁵⁾ 및 「서울특별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¹⁶⁾에 따라 설치 · 운용중인 기금으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통합계정**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채무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¹⁷⁾

1) 통합계정

① 조성규모

- **통합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8조 988억 6,900만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25년도말 조성액(6조 9,999억 1,300만원)보다 1조 989억 5,5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제출된 바,

 - 시금고에 적립한 **예치금**은 '25회계연도말 현재액(1,056억 3,500만원)보다 177억 7,5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맡겨둔 자금인 **예탁금**이 '25회계연도말 현재액(6조 8,942억 7,800만원)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7)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보다 1조 811억 8,000만원 증가하여 '26회계연도말 조성액을 8조 988 억 6,900만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검토됨

〈표 3-7〉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6,999,913	1,288,143	189,187	1,098,955	8,098,869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9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계획은 '25년도(1조 9,495억 9,600만원)보다 △5,255억 9,700만원 감액된 1조 4,239억 9,8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25년도(1,447억 4,000만원)보다 △391억 500만원 감액된 1,056억 3,5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이나, **이자수입**이 '25년도(628억 2,100만원)보다 358억 2,300만원 증액된 986억 4,5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수금수입**은 금년도(1조 7,028억 1,300만원)보다 △5,254억 9,400만원 감액된 1조 1,773억 1,9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8〉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423,998	1,949,596	△525,597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4,146	3,887	259	·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2,177	15,249	△3,071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105,635	144,740	△39,105	· 전년도 이월금
예 수 금 수 입	1,177,319	1,702,813	△525,494	· 예수금 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220	23,970	6,250	·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예 탁 금 이 자 수 입	94,499	58,934	35,564	· 예탁금 이자 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2~24) 재구성

- 지출계획은 '25년도(1조 9,495억 9,600만원)보다 △5,255억 9,700만원 감액된 1조 4,239억 9,800만원인 바,
-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차입해 온 예수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예수금 원리금상환**)를 '25년도(2,297억 5,400만원)보다 △405억 7,300만원 감액된 1,891억 8,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여유재원을 시금고에 적립하는 **예치금**은 '25년도(1,056억 3,500만원)보다 177억 7,500만원 증액된 1,234억 1,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 1개 기금(주택진흥기금)에 융자하는 **예탁금**은 '25년도(1조 6,142억원)보다 △5,028억원 감액된 1조 1,114억원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3-9〉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423,998	1,949,596	△525,597	
기 금 및 회 계 응 차 지 원					
예 탁 금	1,111,400	1,614,200	△502,800	· 기금 및 회계 응자 지원	1,111,400
예수금원금상환	91,247	158,472	△67,225	· 예수금원금상환	91,247
예수금이자상환	97,933	71,281	26,651	· 예수금이자상환	97,933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23,410	105,635	17,775	· 여유자금 예치	123,41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7	7	-	· 기금관리비	7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5~28) 재구성

2) 재정안정화계정

① 조성규모

- **재정안정화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6,589억 9,6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5년도말 조성액(7,134억 1,500만원)보다 △544억 1,9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제출함

〈표 3-1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 성 계 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713,415	20,980	75,399	△54,419		658,996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3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계획은 '25년도(8,340억 4,100만원)보다 △6,840억 4,500만원 감액 편성된 1,499억 9,6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예치금회수**를 금년도(4,391억 7,300만원)보다 △3,101억 5,700만원 감액한 1,290억 1,5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5억 2,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은 194억 6,000만원을 수입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에 2,853억 6,7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26년도에는 미편성한 바, 향후 '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중 이입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49,996	834,041	△684,045	
공공예금이자수입	1,520	8,138	△6,618	· 공공예금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129,015	439,173	△310,157	· 예치금회수
기 타 회 계 전 입 금	-	285,367	△285,367	· 미편성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80,000	△80,000	· 미편성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9,460	21,362	△1,90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6)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여유자금 예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중 예치금이 △544억 1,900만원 감액되어, 차입금이자상환도 △598억 8,000만원 감액되는 등 '25년도 지출계획(8,340억 4,100만원)보다 △6,840억 4,500만원 감액된 1,499억 9,6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바,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¹⁸⁾는 매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5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25회계연도 결산 이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동 계정에 대한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

1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표 3-1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49,996	834,041	△684,045			
여유자금 예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 치 금		74,596	129,015	△54,419	· 기금 운용 여유자금	74,596	
지 방 채 차 입 금 이 자 상 환							
차입금이자상환		75,089	134,970	△59,880	·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75,089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310	310	-	·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등	31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7~38) 재구성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¹⁹⁾,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²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응자지원을 위한 **융자계정**과 창업 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중소기업에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계정**,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음

1) 응자계정

① 조성규모

- **융자계정**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응자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이자차액 보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운용하고 있음
- **융자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47억 2,2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액(762억 5,800만원)보다 △715억 3,600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1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13〉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76,258	204,682	276,218	△71,536	4,72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45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계획은 '25년도보다 △965억 4,600만원 감소한 2,809억 4,0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25년도(1,553억 8,300만원)보다 176억 6,100만원 증액된 1,730억 4,5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회수**를 금년도(1,582억 4,700만원)보다 △819억 8,900만원 감액된 762억 5,8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507억원)보다 △307억원 감액된 200억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6	2025	증감액	산출내역
합계	280,940	377,487	△96,546	
공공예금이자수입	2,020	3,789	△1,76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616	9,366	250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73,045	155,383	17,661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회수	76,258	158,247	△81,989	· 2025년도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전입금	20,000	50,700	△30,70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48~49)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응자하는 **중소기업 직접융자**는 금년도(2,000억원)보다 △200억원 감액된 1,800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은 금년도(869억원)보다 54억원 증액된 923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있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금년도(124억 2,000만원)보다 △101억 1,000만원 감액한 23억 1,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15〉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응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280,940	377,487	△96,546	
중 소 기 업 직 접 융 자				
민 간 용 자 금	180,000	200,000	△20,000	·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180,000
시 중 은 행 협 력 자 금 지 원				
이 차 보 전 금	92,300	86,900	5,400	·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92,300
자 금 통 합 관 리 시 스 템 유 지 보 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3	301	△48	· 유지보수 용역비(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253
기 금 업 무 대 행 수 수 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50	1,602	△252	· 신규대출 및 사후관리수수료 1,3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원금상환	-	10,000	△10,000	· 미편성 -
예수금이자상환	2,310	2,420	△11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2,310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4,722	76,258	△71,536	· 예치금 4,722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수당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50~52) 재구성

2) 투자계정

① 조성규모

- **투자계정**은 서울 소재 창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고자 운용하는 계정임
- 동 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5억 3,9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액(114억 5,200만원)보다 △109억 1,200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16〉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1,452	56,063	66,975	△10,912		539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57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계획은 '25년도(1,121억 3,800만원)보다 △446 억 2,300만원 감액한 675억 1,5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수입계획의 경우, **기타회계전입금**이 금년도(441억 1,000만원)보다 △25 억 5,900만원 감액된 415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575억 2,100만원)보다 △460억 6,800만원 감액된 114억 5,2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임

〈표 3-17〉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7,515	112,138	△44,623	
기 타 사 업 수 입	13,000	9,000	4,000	· 펀드 회수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	1,500	-	· 계좌 운용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2	5	△2	· 위탁사업비 정산반납액
위탁비 반환수입	10	2	8	·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환수금
예 치 금 회 수	11,452	57,521	△46,068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기 타 회 계 전 입 금	41,550	44,110	△2,559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60~61)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은 금년도 (851억 2,300만원)보다 △447억 9,700만원 감액된 403억 2,5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재무활동의 **예치금**이 금년도(114억 5,200만원)보다 △109억 1,200만원 감소된 5억 3,9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수금원금상환**이 금년도(139억 7,000만원)보다 112억 5,000만원 증가한 252억 2,000만원으로 계획됨에 따라,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금년도(269억 9,5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 증가된 271억 7,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18〉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67,515	112,138	△44,623	
서 울 V i s i o n 2 0 3 0 펀 드 조 성				
출 자 금	32,088	69,679	△37,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대전환 펀드 출자 1,500 · 서울바이오 펀드 출자 3,673 · 디지털대전환 펀드 출자 3,363 · 첨단제조 펀드 출자 4,092 · 첫걸음동행(창업지원) 펀드 출자 4,525 · 창조산업 펀드 출자 6,767 · 스카일업 펀드 출자 8,167
서 울 미 래 혁 신 성 장 펀 드 조 성				
출 자 금	6,542	13,529	△6,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170 · 스마트시티 펀드 출자 1,933 ·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 9 · 창업지원 펀드 출자 1,260 · 재도전지원 펀드 출자 875 · 서울바이오 펀드 출자 2,295
서울 벤처펀드(미래혁신, Vision 2030) 운영				
사 무 관 리 비	50	111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운영 심사수당 40 · 벤처조합 규약 법률자문료 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45	203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205 · 사업관리비 40
소 상 공 인 더 성 장 펀 드 조 성				
출 자 금	700	700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 700
녹 색 기 업 창 업 펀 드 제 5 호 조 성				
출 자 금	700	900	△200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 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예수금원금상환	25,220	13,970	11,250	·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25,2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예수금이자상환	1,419	1,573	△153	·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1,419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539	11,452	△10,912	· 기금 운용 여유자금 539
기 본 경 비				
사 무 관 리 비	10	20	△10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비 등 1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62~65) 재구성

3) 사회적경제계정

① 조성규모

-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자 운용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651억 1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액(610억 7,400만원)보다 40억 2,7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19〉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61,074	12,100	8,072	4,027	65,101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71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계획은 '25년도보다 △100억 6,000만원 감소된 331억 7,4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25년도(108억 7,300만원)보다 △22억 9,200만원 감액된 85억 8,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298억 7,600만원)보다 △88억 200만원 감액된 210억 7,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12억 5,100만원)보다 8,100만원 증액된 1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입계획을 제출하였음

〈표 3-20〉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33,174	43,235	△10,060	
기 타 사 업 수 입	878	-	878	· 임팩트펀드 1호 출자금 회수
공공예금이자수입	1,241	1,111	129	·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7	123	△55	·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581	10,873	△2,292	·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예 치 금 회 수	21,074	29,876	△8,802	· 예치금 회수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332	1,251	81	· 예탁금 이자 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74~75)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금년도(1억 3,000만원)보다 △9,100만원 감소된 3,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응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사업의 응자금은 금년도(60억원)보다 20억원 증액된 80억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 재무활동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금년도(210억 7,400만원)보다 40억 2,700만원 증가된 251억 1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타 기금으로 응자하는 **예탁금**은 '26년도에는 미편성한 바,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금년도(310억 7,400만원)보다 △59억 7,200만원 감소된 251억 1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 다만, 지출계획중 **사회적경제기업투융자**의 경우,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사업내용중 ①사업비, ②사업기간, ③출자금 관련 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바,

- 기금의 지출계획을 승인받고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등²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법정 첨부서류로서 지출계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 일 수밖에 없어 다음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1〉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3,174	43,235	△10,060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				
이 차 보 전 금	39	130	△91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 39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	6	2	· 기금업무 대행 수수료 8
민간융자금	8,000	6,000	2,000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8,000
채권 및 기타 관리비				
사무관리비	15	15	-	· 채권관리 비용(법적조치 수수료 등) 15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25,101	21,074	4,027	· 여유자금 예치 25,1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예탁금	-	10,000	△10,000	· 미편성 -
기금 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0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1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76~77) 재구성

21)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서생략)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5. 7), p.140, p.390

(3) 식품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²²⁾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²³⁾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²⁴⁾에 따라 정수한 과징금 수입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669억 6,000만원으로 '25년도말(623억 3,100만원)보다 46억 2,8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함

〈표 3-22〉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62,331	8,432	3,803	4,628	66,96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83

22)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계획은 '25년도(236억 8,200만원)보다 △49억 1,700만원 감액된 187억 6,400만원으로
-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금년도(56억 6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 감소한 50억 5,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전년도 여유재원 등에 대한 **예치금 회수**를 금년도(147억 900만원)보다 △43억 7,700만원 감액 편성한 103억 3,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3-23〉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764	23,682	△4,917	
공공예금이자수입	419	405	13	·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8	22	5	· 융자금 이자
기 타 이 자 수 입	5	3	1	· 보조금 반납액 이자
사 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9	26	3	·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	6	2	·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과 징 금	1,150	1,148	1	·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시 귀속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058	5,606	△548	·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예 치 금 회 수	10,331	14,709	△4,377	· 예치금 회수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731	1,751	△19	· 예탁금 이자 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86~87)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236억 8,200만원)보다 △49억 1,700만원 감액된 187억 6,400만원인 바, 정책사업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의 세부사업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을 금년도와 동일한 3,4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동 정책사업에 **우리아이 건강키움존 운영, 다소비 가공식품 영양등급제 도입, 다양한 식문화 확산 지원사업,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순증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경우에는 예탁금은 금년도(100억원)보다 △70억원 감액 편성한 30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예치금은 금년도(103억 3,100만원)보다 16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한 119억 6,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제출됨

〈표 3-24A〉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764	23,682	△4,917	
식 품 위 생 영 업 자 민 간 용 자 지 원				
민 간 용 자 금	1,200	1,500	△300	· 식품진흥기금 민간 용자 1,200
소 비 자 식 품 위 생 감 시 원 교 육 및 운 영				
사 무 관 리 비	8	8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운영 3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2
행 사 운 영 비	5	5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성과보고회 5
기 타 보 상 금	21	21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석수당 21
식 품 접 각 영 업 자 등 위 생 교 육 비 지 원				
사 무 관 리 비	20	20	-	· 위생교육 등 홍보물 제작 20
민간경상사업보조	396	396	-	· 한국외식업중앙회 223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115 · 대한제과협회 43 · 한국유홍음식업중앙회 13
선 제 적 식 중 독 예 방 활 동 강 화				
사 무 관 리 비	115	115	-	· 식중독예방 홍보물품 등 구매제작 10 · 식중독 문자지수 서비스 20 · 1830 손씻기 교육 및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75 · 식중독 대응요원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 교육운영비 10
기 타 보 상 금	70	70	-	·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지원활동비 20 ·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지원활동비 5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88~98) 재구성

〈표 3-24B〉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주요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764	23,682	△4,917	
먹 거 리 통 계 및 기 반 구 축				
사 무 관 리 비	182	20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먹거리통계조사 134 · 밀라노협약상 제출 및 홍보 등 18 · 콘퍼런스 사전 자문회의, 통역비 등 10 · 지속가능한 건강공공급식 사업 20
행 사 운 영 비	55	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먹거리 국제콘퍼런스 개최 55
먹거리 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사 무 관 리 비	13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3
우 리 아 이 건 강 키 움 존 운 영				
사 무 관 리 비	70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실무자 협의체 구성 운영 등 70
다 소 비 가 공 식 품 영 양 등 급 제 도 입				
사 무 관 리 비	90	-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다소비 식품접객 현황 분석 등 30 · 영양등급제 적용 및 기업협력 40 · 자문회의비 20
다 양 한 식 문 화 확 산 지 원 사 업				
사 무 관 리 비	50	-	50	건강음식점 운영 현황 모니터링 등 50
건 강 한 외 식 환 경 조 성				
사 무 관 리 비	472	-	4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쾌한 한끼 음식점 발굴 및 유지관리 174 · 공공기관 맵 등 음식점 DB연계 100 · 홍보·인쇄물, 인증마크 제작·배포 등 188 · 자문회의 10
기 타 보 상 금	80	-	80	· 시민 서포터즈 등 활동비 8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	-	40	· 매체 홍보 40
식 품 안 전 정 보 누 리 집 운 영 및 유 지 보 수				
사 무 관 리 비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
공 공 운 영 비	74	70	3	· 식품안전정보누리집 유지보수 74
식 품 안 전 전 문 교 육				
사 무 관 리 비	100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및 회의운영 3 · 식품안전 전문교육 운영비 97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88~98) 재구성

〈표 3-24C〉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주요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764	23,682	△4,917	
식 품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사 무 관 리 비	23	3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점검 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식품위생 홍보물 제작 등 3 · 유통시설 등 마약류 예방 홍보물 제작 20
재 료 비	6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구매비 3 · 식품접객업소 검사시료 수거비 3
기 타 보 상 금	334	3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9 · 위생지도서비스 200 · 식품제조 판매업소 합동점검 15 ·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자체점검 20 · 자료조사 및 교육 홍보 40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해요소 관리 활동 40
전 통 시 장 위 생 지 도				
사 무 관 리 비	10	10	-	· 전통시장 위생관리 개선용품 지원 10
서 울 시 민 식 품 위 해 요 소 발 굴 및 개 선				
사 무 관 리 비	9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인 개선 회의 운영 1.5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교육 자료 제작 0.5 · 위해요소 예방 가이드북 제작 7
자 치 구 식 품 안 전 및 위 생 분 약 종 합 평 가				
사 무 관 리 비	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미련 자문회의 및 평가위원회 등 수당지급 1 · 평가자료집 제작 등 운영비 0.5 · 자치구 사업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0.5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350	3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대상) 50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최우수) 90 · 우수 140 · 노력 30 · 특수사업 40
여 유 자 금 예 탁				
예 탁 금	3,000	10,000	△7,000	· 예탁금 3,00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1,960	10,331	1,628	· 예치금 11,96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심의회 운영 등 기금관리비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88~98) 재구성

(4) 기후대응기금

(1) 조성규모

- **기후대응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²⁵⁾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26년도말 86억 1,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5년도말 조성액(207억 9,100만원)보다 △121억 7,8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2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20,791	17,484	29,662	△12,178	8,61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03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6년도에 382억 7,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규모(495억 7,200만원)보다 △112억 9,600만원 감액된 것인 바,
-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을 금년도(120억원)보다 △80억원 감액편성한 40억원으로 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6억 6,700만원)보다 △5억 3,400만원 감액된 1억 3,3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치금회수의 경우에는 금년도(250억 400만원)보다 △82억 1,300만원 감액된 167억 9,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25)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26〉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38,275	49,572	△11,296	
공 유 재 산 임 대 료	55	54	1	·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임대료 · 개화차량기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
배 당 금 수 입	3,930	2,337	1,593	·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공공예금이자수입	339	523	△184	·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44	91	△46	· 서울에너지공사융자금 및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위 탁 비 반 환 수 입	154	-	154	· '24년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정산금
그 외 수 입	340	398	△57	·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수입 · 마곡 플러스에너지타운 운영 수입 · 수요지원시장 정산금 · 에너지드림센터 전력판매수입 등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954	6,543	4,410	· 민간융자사업 원금 회수수입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수입	610	610	-	·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예 치 금 회 수	16,791	25,004	△8,213	· 전년도말 예치금 잔액
기 타 회 계 전 입 금	921	1,341	△419	·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 비용 환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00	12,000	△8,000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33	667	△534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06~109)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금년도(495억 7,200만원)보다 △112억 9,600만원 감액된 382억 7,5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예치금을 금년도(167억 9,100만원)보다 △81억 7,800만원 감액 편성한 86억 1,2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을 금년도(157억 4,600만원)보다 △29억 8,400만원 감액된 127억 6,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서부지사 노후열원시설 안정성 제고**에 24억원을 신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27A〉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8,275	49,572	△11,296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8,612	16,791	△8,178	· 여유자금 예치 8,612
기 후 변 화 대 응 혁 신 기 술 실 증 지 원 사 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1,000	-	· 혁신기술 실증지원 및 검증 900 · 대행수수료 및 운영비 100
온 실 가 스 배 출 권 거 래 제 배 출 권 관 리				
공 공 운 영 비	1,467	1,990	△52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467
녹 색 기 업 창업 펀 드 운 영 및 조 성				
출 자 금	400	400	-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 출자 400
민 간 건 물 에 너 지 효 율 화 지 원				
사 무 관 리 비	33	35	△1	· 민간BRP 응자지원사업홍보리플릿제작 등 8 · 민간 BRP 응자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25
공 공 운 영 비	20	-	20	· 웹 취약점 조치 및 접근성 개선 등 20
민간경상사업보조	250	225	25	· 안심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 지원 250
이 차 보 전 금	458	468	△9	· 이차보전금 지원 458
민 간 용 자 금	12,000	15,000	△3,000	· 건물및주택부문에너지효율화 응자지원 12,000
노 후 주 택 에 너 지 효 율 화 지 원				
사 무 관 리 비	35	50	△14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10 ·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25
공 공 운 영 비	14	-	14	· 온라인 자원시스템 유지보수 14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	1,500	-	·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보조금 1,500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SEMS) 도 입				
사 무 관 리 비	50	50	-	· SEMS실증운영 및 효과성 분석비 50
민 간 건 물 신 재 생 에 너 지 보 급				
사 무 관 리 비	5	4	0.8	· 사업 관련 자문 심의 등 운영비 5
민간경상사업보조	496	501	△5	· BIPV 민간보급 사업 495 · 주택지원사업(태양열, 지열) 1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10~117) 재구성

<표 3-27B>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8,275	49,572	△11,296	
서 울 형 핫 빛 발 전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300	△120	· 핫빛발전 지원 180
이 차 보 전 금	0.5	-	0.5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이자차액 보전 0.5
주 민 수 요 반 응 서 비 스 운 영				
사 무 관 리 비	39	30	9	· 수요반응(DR) 서비스 홍보 39
공 공 운 영 비	55	122	△67	· 수요반응(DR) 서비스 운영비 55
기 타 보 상 금	201	362	△161	· 수요반응 인센티브 201
친 환 경 실 천 우 수 아 파 트 선 발 대 회				
사 무 관 리 비	23	50	△27	·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10 ·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8 · 대회 심사비 지급 5
기 타 보 상 금	77	100	△23	· 사상금지급(대상) 20 · 사상금지급(최우수상) 27 · 사상금지급(우수상) 30
민 간 지 열 설 비 효 율 개 선 사 업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470	500	△30	· 노후 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비 지원 450 · 지역 부속설비 정비비용 지원 20
노 원 열 원 시 설 안 정 화 사 업 (2 단 계)				
공사·공단 등 용 자 금	6,880	6,840	40	·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2단계) 6,88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보증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	15	3	· 자치구(도봉,성북) REC 판매금 재교부 18
서 부 지 사 노 후 열 원 시 설 안 정 성 제 고				
공사·공단등 용 자 금	2,400	-	2,400	· 목동 열원시설 개보수 2,4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10~117) 재구성

〈표 3-27C〉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8,275	49,572	△11,296	
기 후 테 크 펀 드 조 성 · 운 용				
사 무 관 리 비	7	-	7	· 규약 법률검토 비용 · 펀드 자문회의
출 자 금	750	1,000	△250	· 기후테크 펀드 제2호 출자금 750
재 활 용 사 업 자 육 성 자 금 용 자 지 원				
이 차 보 전 금	24	28	△4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4
민 간 용 자 금	800	1,000	△200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지원 800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이 차 보 전 금	2	2	△0.2	· 다회용기 사업자 지원 이차보전금 2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기금관리비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10~117) 재구성

- '26년도 지출계획에서 출자금을 신규편성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은 출자금 4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기후 테크 펀드 조성 · 운용**은 출자금 7억 5,000만원 등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중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됨²⁶⁾)

26)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061, ② 제출 : '25. 8.11. ③ 의결 : '25. 9. 5. (가결)

(5) 도로굴착복구기금

(1) 조성규모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²⁷⁾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규모 273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말 조성액(204억 1,800만원)보다 69억 4,1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28〉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20,418	47,289	40,347	6,941		27,36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23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금년도(825억 7,100만원)보다 △148억 6,400만원 감액된 677억 700만원으로 운용계획된 바,
- 수입계획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7억 9,6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 증가한 10억 9,4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금년도(411억 2,900만원)보다 50억 6,600만원 증액한 461억 9,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406억 4,600만원)보다 △202억 2,800만원 감액된 204억 1,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27)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29〉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67,707	82,571	△14,864	
공공예금이자수입	1,094	796	29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 담 금	46,195	41,129	5,066	·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예 치 금 회 수	20,418	40,646	△20,228	· 예치금회수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26)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예치금이 금년도(204억 1,800만원)보다 69억 4,100만 원 증액된 273억 6,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금년도 (617억 800만원)보다 △218억 800만원 감액한 399억원으로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3-30〉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67,707	82,571	△14,864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설 비	37,200	58,972	△21,772	· 굴착복구공사 37,200
감 리 비	2,700	2,700	-	·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700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공 공 운 영 비	432	425	6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432
여 유 자 금 예 치 (도로굴착복구기금)				
일 반 예 치 금	27,360	20,418	6,941	· 여유자금 예치 27,36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5	15	-	· 위원회 수당, 전문가 자문수당 등 1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27~128) 재구성

(6) 양성평등가족기금

(1) 조성규모

- **양성평등가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²⁸⁾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²⁹⁾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평등한 사회문화 확대, 민간단체의 역량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25년도말 조성액(257억 6,700만원)보다 3억 600만원 증액된 260억 7,400만원을 '26년도말 조성액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31〉 2026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25,767	1,251	944	306	26,074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33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경우, '26년도에는 38억 1,800만원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25년도(40억 1,800만원)와 비교하여 △1억 9,900만원 감소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통합계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이자수입**을 금년도(9억 6,7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 감액한 7억 7,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는 금년도(10억 2,8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 증액된 25억 6,700만원 등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28)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9)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표 3-32〉 2026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3,818	4,018	△199	
공공예금이자수입	19	13	6	· 공공예금 이자
기 타 이 자 수 입	1	0.2	1	· 단체 지원금 발생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9	30	△10	· 단체 지원금 반납금
그 외 수 입	437	1,879	△1,441	· 다동이카드 적립금
예 치 금 회 수	2,567	1,028	1,539	· 전년도 이월금
기 타 회 계 전 입 금	-	100	△100	· 미편성
예 탁 금 이 자 수 입	772	967	△19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36~137)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금년도(25억 6,700만원)보다 △14억 9,300만원 감액한 10억 7,400만원으로 계획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양성평등 가족 기금) 예탁금은 금년도에는 미편성하였으나 '26년도에 18억원을 순증하여 지출계획하였으며,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은 금년도(6억 5,800만원)보다 △5,100만원 감액된 6억 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33A〉 2026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818	4,018	△199	
여 유 자 금 예 치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일 반 예 치 금	1,074	2,567	△1,493	· 여유자금 예치 1,0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양성평등 가족 기금)				
예 탁 금	1,800	-	1,800	· 예탁금 1,8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38~140) 재구성

〈표 3-33B〉 2026년도 양성평등가족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818	4,018	△199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공 모 사 업				
사 무 관 리 비	50	50	-	· 공모사업 컨설팅 50
민간경상사업보조	550	601	△51	· 공모사업 5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	7	-	· 신문공고료 7
양 성 평 등 문 화 확 산 을 위 한 단 체 지 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70	100	△30	· 양성평등단체 운영비 지원 70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1	121	-	· 콘텐츠 제작 121
양 육 행 복 도 시 성 과 평 가				
연 구 용 역 비	133	100	33	·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평가 용역 133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3	13	-	· 심사자료 제작비 1 · 심의회 심사수당 등 1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38~140) 재구성

(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 조성규모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³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³¹⁾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94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말 조성액(100억 7,700만원)보다 △6억 6,5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함

〈표 3-34〉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0,077	35,171	35,836	△665		9,41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45

(2) 운용계획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6년도에 432억 4,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421억 9,000만원)보다 10억 5,900만원 증액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3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는 금년도(91억 5,200만원)보다 △10억 7,400만원 감액된 80억 7,700만원을 수입계획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326억 5,900만원)보다 22억 2,500만원 증액된 348억 8,4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43,249	42,190	1,059	
공공예금이자수입	220	294	△74	· 예치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8,077	9,152	△1,074	· 전년도 기금운영 집행잔액 회수
기 타 회 계 전 입 금	34,884	32,659	2,225	· 기금 전입금
예 탁 금 이 자 수 입	66	83	△1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48~149)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난방비지원**³²⁾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3개 세부사업(양천, 강남, 노원)에 금년도와 동일한 112억 9,1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³³⁾은 2개 세부사업(노원, 양천)에 금년도(103억 900만원)보다 6억 400만원 증액된 109억 1,4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³⁴⁾의 경우, 세부사업인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에 금년도(112억 8,300만원)보다 11억 3,100만원 증액된 124억 1,4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노원주민 편의시설 이용료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 4,500만원을 지출계획 하여 제출한 것으로 검토됨

34) ■ 단위사업명 : 주민복지증진사업비(관리비/임대비)지원(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역기금)
- 세부사업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노워즈미 평이시설 이용료 지원

〈표 3-36〉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편 성 목				
합 계	43,249	42,190	1,059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66	4,166	-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4,166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31	1,731	-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1,731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393	5,393	-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5,393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3	186	36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23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2	381	△18	·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362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9	350	△30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319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4	163	1	·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64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5,600	400	· 노원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지원 5,967 · 노원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32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914	4,709	204	· 양천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지원 4,914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414	11,283	1,131	· 강남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지원 및 임대료 지원 12,414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5	145	-	· 노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145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7,412	8,077	△665	· 여유자금 예치 7,41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50~153) 재구성

(8)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³⁵⁾ 등에 근거 하며 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계정·장애인계정·자활계정·주거지원계정 총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1) 노인복지계정

① 조성규모

□ **노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계정임

○ 동 계정은 '26년 말 121억 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말 조성액(121 억 9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37〉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2,109	444	449	△5		12,104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61

3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6년도에 10억 6,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11억 6,200만원)보다 △9,8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를 금년도(6억 4,2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액한 6억 1,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4억 7,900만원)보다 △9,600만원 감액한 3억 8,2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금년도(3,000만원)보다 1,800만원 증액한 4,800만원으로 수입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38〉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064	1,162	△98	
공공예금이자수입	12	10	1	· 공공예금 발생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주 1)}	0	0	0	· 기타 이자수입
사·도보조금등반환수입	0.9	0.9	-	· 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 입	48	30	18	· 그외수입
예 치 금 회 수	619	642	△22	· 전년도 이월금 등
예 탁 금 이 자 수 입	382	479	△9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64~165) 재구성

주1)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26년도 13만 8,000원, '25년도 13만 6,000원을 수입계획함

- 지출계획은 금년도 보다 △9,800만원 감액된 10억 6,400만원 지출계획한 것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2억 4,000만원),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1억 900만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출계획하고, **어르신 주거 지원**은 금년도(7,2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액한 5,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39〉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064	1,162	△98	
어 르 신 정 보 화 교 육				
사회복지사업보조	40	40	-	. 어르신 컴퓨터교실운영 40
어 르 신 일 자 리 사 업 장 운 영 지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40	240	-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 240
시 설 종 사 자 역 량 강 화				
사회복지사업보조	109	1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워크숍 5 . 어르신 생활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30 .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 1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5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14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 10 .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 10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 25
어 르 신 주 거 지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7	72	△15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운영 57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614	619	△5	. 예치금 614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3	3	-	.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개최비용 등 3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66~168) 재구성

2) 장애인복지계정

① 조성규모

-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계정임
- 동 계정은 '26년도말에 152억 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5년도말 조성액(166억 3,000만원)보다 △14억 2,3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40〉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6,630	1,971	3,395	△1,423		15,206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73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6년도에 42억 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규모(96억 4,500만원)보다 △54억 4,300만원 감소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예치금회수**는 금년도(74억 900만원)보다 △51억 7,900만원 감액된 22억 3,0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입은 금년도(14억 7,6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 감액된 13억 2,3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41〉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4,201	9,645	△5,443	
공공예금이자수입	158	149	8	·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	9	△0.9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23	1,476	△153	·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예 치 금 회 수	2,230	7,409	△5,179	· 전년도 이월금
예 탁 금 이 자 수 입	479	600	△12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76~177)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금년도보다 △54억 4,3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예치금을 금년도(22억 3,000만원)보다 △14억 2,300만원 감액된 8억 6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금년도(74억원) 보다 △46억 8,000만원 감액된 27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 지원사업**(4억 6,000만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사업**(2억원)을 신규 지출계획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³⁶⁾은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예산사업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체가능한 경우 동 계정의 지출계획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6)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93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표 3-42〉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4,201	9,645	△5,443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2,720	7,400	△4,680	· 민간융자금 2,72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460	-	46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 보증금 46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200	-	200	· 공동생활가정 전세주택 보증금 200
여유자금예치(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일반예치금	806	2,230	△1423	· 여유자금 예치 806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15	15	-	· 기금관리비 1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78~179) 재구성

3) 자활계정

① 조성규모

- **자활계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계정임
- 동 계정은 '25년도말 조성액(90억 2,6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 감액된 86억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함

〈표 3-43〉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9,026	621	1,002	△381		8,64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85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6년도에 52억 2,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 규모(56억 3,300만원)보다 △4억 5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금년도(48억 8,800만원)보다 △2억 8,100만원 감액된 46억 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금년도(1억 8,400만원)보다 △5,700만원 감액된 1억 2,7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되었음

〈표 3-44〉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5,227	5,633	△405	
공공예금이자수입	170	199	△28	·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2	25	△2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주 1)}	0	0	0	·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 입	153	152	1	· 그외 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7	184	△57	· 전세점포 등 임대자금 회수금
예 치 금 회 수	4,606	4,888	△281	· 예치금 회수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47	184	△37	·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88~189) 재구성

주1)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26년도 11만 8,000원, '25년도 10만 6,000원을 수입계획함

-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은 예치금을 금년도(46억 6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 감액한 42억 2,5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금년도(4억 4,900만원)보다 △1,900만원 감액한 4억 3,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45〉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5,227	5,633	△405	
자 활 종 합 경 영 지 원 사 업				
민 간 위 탁 금	80	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지원 33 · 자활상품 디자인 개선 20 · 시설 등 장비 지원 27
자 활 교 육 훈 련				
민 간 위 탁 금	111	1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종사자 등 전문교육훈련 55 · 자격증 취득 지원 26 · 민관합동워크숍 30
광 역 자 활 사 업 육 성 및 지 원				
민 간 위 탁 금	262	27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사업지원 15 · 자활기업 사업지원 8 · 업종별사업단네트워크 지원/기업신규사업개발 19 · 서울형 자활사업 개발 149 ·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 13 ·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비 55
자 활 유 통 활 성 화				
민 간 위 탁 금	53	5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판로개척 38 · 자활상품 지원 15
전 세 점 포 임 대 자 금 용 자 지 원				
민 간 용 자 금	430	44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지원 430
자 활 조 사 , 홍 보 및 연 대 사 업				
민 간 위 탁 금	60	5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조사, 연구 33 · 자활사업 홍보 23 · 유관기관 연대사업 4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4,225	4,606	△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치금 4,225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개최 비용 등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90~192) 재구성

4) 주거지원계정

- **주거지원계정**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및 주택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계정임

① 조성규모

- 동 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86억 9,2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5년도말 조성액(143억 600만원)보다 △56억 1,4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46〉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4,306	5,281	10,895	△5,614		8,69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97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6년도에 195억 8,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285억 8,700만원)보다 △89억 9,9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 '25년도(2억 5,000만원)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25년도(63억 3,300만원)보다 △18억 3,300만원 감액된 45억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47〉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9,587	28,587	△8,999	
공공예금이자수입	441	557	△116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50	250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이자수입
그 외 수 입	90	80	1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연체료 및 과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환수금 반납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500	6,333	△1,833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원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0	4,500	△4,500	· 미편성
예 치 금 회 수	14,306	20,916	△6,609	· 예치금 회수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00~201)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금년도(86억 3,100만원)보다 △14억 1,500만원 감액한 72억 1,5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도 금년도(56억 5,000만원)보다 △19억 7,000만원 감액한 36억 8,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48〉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9,587	28,587	△8,999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8,692	14,306	△5,614	· 여유자금 예치 8,692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료 보 조 지 급				
사회보장적 수 혜 금	7,215	8,631	△1,415	· 서울형 주택바우처 7,215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보 증 금 융 자				
민간융자금	3,680	5,650	△1,97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융자 및 주거취약 계층 주거상향 임대 보증금 융자 3,68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02~203) 재구성

(9) 체육진흥기금

-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³⁷⁾에 근거하여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26년도말 546억 5,100만원을 조성계획한 것으로 '25년도말 조성액(550억 9,700만원)보다 △4억 4,6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49〉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5,097	9,303	9,749	△446	54,651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09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6년도에 120억 7,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 규모(149억 6,800만원)보다 △28억 8,9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의 주요 변동사항은 **예치금회수**가 금년도(52억 4,300만원)보다 △24억 6,700만원 감액된 27억 7,5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도(21억 8,1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 감액된 17억 4,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3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3-50〉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2,078	14,968	△2,889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92	155	△62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2,775	5,243	△2,467	· 운용기금 계좌 잔액 이월
기 타 회 계 전 입 금	7,468	7,388	80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742	2,181	△43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12~213)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이 금년도(27억 7,500만원)보다 △4억 4,600만원 감액된 23억 2,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운영 준비** 사업에 6,500만원을 신규 지출계획 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에서 시설개선·개보수사업 이외의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모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검토됨

〈표 3-51〉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금년도와 지출계획 규모가 동일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A)	2 0 2 5 (B)	증 감 액 (A-B)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37	437	-
학 교 운 동 부 육 성 지 원	424	424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360	360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56	256	-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20	120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480	480	-

〈표 3-52A〉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2,078	14,968	△2,889	
미 래 희 망 스 포 츠 영 재 육 성				
민간경상사업보조	437	437	-	· 초·중·고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지원 437
학 교 운 동 부 육 성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4	424	-	·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400 · 학교운동부 창단비 지원 24
전 문 체 육 지 원 프 로 그 램 운 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0	360	-	· 주니어스포츠클럽 운영 360
태 륭 라 이 플 사 경 장 운 영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6	256	-	· 국유재산 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256
봉 황 기 전 국 고 교 야 구 대 회 개 최 지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20	120	-	· 2026 봉황기 고교야구대회 지원 120
야 구 장 시 설 개 보 수				
사 무 관 리 비	162	158	4	· 잠실야구장 환경·질서유지 용역 162
시 설 비	1,533	2,280	△747	·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550 · 잠실야구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00 · 잠실야구장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검검 용역 258 · 잠실야구장 전기설비 개선공사 140 · 목동야구장 환경개선 공사 350 · 목동야구장 조명타워 PLC 이중화 공사 52 · 목동야구장 음향설비 보수공사 16 · 목동야구장 기계설비 불용설비 철거공사 22 · 신월야구공원 선수 대기공간 조성공사 45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9	81	△71	· 목동야구장 이동식 냉방기 구매 9
고 척 스 카 이 돔 시 설 개 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26	2,208	△682	· 수선유지비 1,241 · 지급수수료 28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14~219) 재구성

〈표 3-52B〉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2,078	14,968	△2,889	
잠 실 종 합 운 동 장 등 노 후 체 육 시 설 개 보 수				
시 설 비	3,736	4,571	△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시설물(전기설비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360 · 경기장 시설물(기계설비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300 · 경기장 시설물(건축,토목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600 · 경기장 시설물(소방설비 연간단기) 유지보수공사 270 · 잠실종합운동장 위험수목 전자공사 80 · 잠실종합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30 · 경관안전단 및 경관안전감용역(설비제작, 제1,2수영장, 효창운동장) 439 · 잠실종합운동장 외 깨끗 양성보호하기(CCTV) 개선공사 250 · 잠실운동장 및 효창운동장 석면건축물 석면관리 37 ·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900 · 효창운동장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 320 · 효창운동장 보일러 교체공사 90 · 효창운동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60
잠 실 야 구 장 대 체 구 장 운 영 준 비				
사 무 관 리 비	65	-	65	·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운영준비 65
여 유 자 금 예 치				
예 치 금	2,329	2,775	△446	· 여유자금 예치금 2,329
기 금 관 리 비				
일 반 운 영 비	10	10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등 운영경비 10
서 울 컵 유 소 년 야 구 대 회 개 최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5	100	△5	· 서울컵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지원 95
체 육 취 약 계 총 재 능 나 늄 사 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3	133	△9	·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123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서울100k) 운영				
사 무 관 리 비	10	8	2	· 실무회의 운영 등 1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400	-	· 대회 운영비 400
장 애 인 체 육 우 수 선 수 육 성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	48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48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14~219) 재구성

(10)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³⁸⁾ 및 「재해구호법」³⁹⁾, 그리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⁴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중인 기금으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 안전 기여를 위한 **구호계정**을 각각 운용하고 있음

1) 재난계정

① 조성규모

□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사업, 연구용역 사업, 응급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정으로 '26년도말 조성액은 8,831억 1,8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5년도말 조성액(8,349억 8,400만 원)보다 481억 3,400만원 증액하여 제출한 것임

〈표 3-53〉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834,984	430,626	382,492	48,134	883,11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27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9)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6년도에 9,156억 1,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운용 규모(1조 3,923억 2,400만원)보다 △4,767억 1,400만원 감액된 규모임
- '26년도 수입계획을 '25년도와 비교하면 **예치금회수**를 금년도(6,316억 100만원)보다 △1,466억 1,700만원 감액된 4,849억 8,400만원으로 계획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에서 정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금년도(3,804억 2,300만원)보다 82억 4,800만원 증액된 3,886억 7,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표 3-54〉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15,610	1,392,324	△476,714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	·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 입	300	300	-	· 과년도 정산 반납금 등
예 치 금 회 수	484,984	631,601	△146,617	· 예치금 회수
기 타 회 계 전 입 금	388,671	380,423	8,248	· 일반회계 전입금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1,655	-	11,65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30~231)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세부사업인 **재난예방**사업의 시설비를 금년도(2,400억 6,400만원)보다 △640억 6,400만원 감액한 1,760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응급복구**(190억원)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7억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출계획한 것임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아울러 예치금은 금년도(4,849억 8,400만원) 대비 481억 3,400만원 증액한 5,331억 1,8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바, 일반예치금은 3,528억 원을 지출계획하고, 의무예치금은 1,803억 1,8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55〉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915,610	1,392,324	△476,714	
재 난 예 방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사 무 관 리 비	20,000	20,000	0	· 재난예방 사업 지원	20,000
재 료 비	4,000	4,000	0	· 재난예방 사업 지원	4,000
시 설 비	176,000	24,064	△64,064	· 재난예방 사업 지원	176,000
응 급 복 구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사 무 관 리 비	1,000	1000	-	·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1,000
시 설 비	19,000	19,000	-	·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19,000
연 구 용 역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사 무 관 리 비	400	400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400
연 구 용 역 비	100	100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100
시 설 비	200	200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	20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0	15	△5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1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352,800	338,700	14,100	· 시금고 예치금	352,800
의 무 예 치 금	180,318	146,284	34,034	· 시금고 예치금	180,318
지 방 채 증 권 원 리 금 상 환					
지 방 채 증 권 이 자 상 환	11,782	-	11,782	· 지방채 이자 상환	11,782
지 방 채 증 원 금 상 환	150,000	150,000	-	· 지방채 원금 상환	150,0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32~234) 재구성

2) 구호계정

- 구호계정은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운영,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및 급식,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계정임

① 조성규모

- 동 계정은 '26년도말 1,803억 9,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5년도말 조성액(1,254억 6,800만원)보다 549억 2,200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3-56〉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25,468	61,021	6,098	54,922	180,39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39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계획은 1,864억 8,900만원으로 '25년도 운용규모 (2,011억 3,100만원)보다 △146억 4,1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년도(10억원)보다 32억 8,400만원 증액된 42억 8,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1,370억 8,000만원)보다 △116억 1,200만원 감액된 1,254억 6,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7〉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86,489	201,131	△14,641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4,284	1,000	3,284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5	5	-	· 기타 이자수입
사 도 보 조 금 등 반 환 수 입	5	5	-	· 자치구 정산금액 반납 등
그 외 수 입	5	5	-	· 시설 정산금액 반납 등
국 고 보 조 금	-	5,430	△5,430	· 미편성
예 치 금 회 수	125,468	137,080	△11,612	· 전년도 이월금
기 타 회 계 전 입 금	56,722	57,605	△883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42~243)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금년도(2,011억 3,100만원)보다 △146억 4,100만원 감액된 1,864억 8,9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지출계획중 **0재민 재해보상**을 금년도(672억 2,700만원)보다 △662억 8,900만원 감액된 9억 3,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금년도(53억 1,300만원)보다 △8억 3,700만원 감액한 44억 7,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여유자금 예치**를 금년도(1,254억 6,800만원)보다 549억 2,200만원 증액한 1,803억 9,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58〉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86,489	201,131	△14,641	
이 재 민 재 해 보 상				
사 무 관 리 비	2	2	-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2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35	59,022	△58,687	· 이재민 구호비 예상액 33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	8,202	△7,602	· 이재민 재난지원금 예상액 600
의 료 및 구 호 비 지 원				
사 무 관 리 비	577	2,508	△1,930	· 취약계층(폐지수거어르신등) 폭염대응 물품지원 54 · 응급구호세트 등 구호물자 구입비 455 · 전시구호물자 구입비 65 · 재해구호물자 창고운영경비 1
공 공 운 영 비	10	10	-	· 재해구호물자 통신단말기 통신비 5 · 재해구호물자창고 공공요금 4
무 더 위 쇼 터 냉 방 비 지 원				
사 무 관 리 비	5	15	△10	· 서부공원여가센터 무더위쉼터 운영비 5
사회복지사업보조	210	975	△764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노숙인, 쪽방촌무더위쉼터) 21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59	4,259	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어르신 무더위쉼터) 4,259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80,390	125,468	54,922	· 여유자금 예치 180,390
반 환 금 및 기 타				
국고보조금반환금	93	599	△506	· 국고사업 반환금 93
기 금 관 리 비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사 무 관 리 비	5	-	5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44~246) 재구성

(11)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⁴²⁾에 따라 설치 · 운용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5,900만원이며 '25년도말 조성규모 (324억 7,8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59〉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32,478	1,163	1,681	△518	31,959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51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6년도에 336억 4,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5년도 운용 규모(344억 1,500만원)보다 △7억 7,400만원 감액된 것임

-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년도(12억 2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 감액된 10억 3,600만원을 수입계획하고,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332억 1,300만원)보다 △7억 3,400만원 감액된 324억 7,8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4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표 3-60〉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33,641	34,415	△774	
공공예금이자수입	1,036	1,202	△166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2	-	2	· 보조금 정산 이자 반납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25	-	125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예 치 금 회 수	32,478	33,213	△734	· 전년도 이월액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54) 재구성

-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금년도(18억 8,7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 감액한 16억 3,1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여유자금 예치**는 금년도(324억 7,8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 감액한 319억 5,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61〉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33,641	34,415	△774	
남북 교 류 협 력 및 평 화 통 일 기 반 조 성 사 업				
사 무 관 리 비	134	115	19	· 평화통일 교육사업 18 ·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10 ·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106
행 사 운 영 비	200	250	△50	·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100 · 한반도 평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1,297	1,522	△224	· 평화통일 교육사업 352 ·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300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645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31,959	32,478	△518	· 예치금 31,959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0	50	-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운영비 등 5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55~257) 재구성

(12) 지역교류협력기금

- **지역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⁴³⁾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지역교류협력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도말 조성액(12억 2,400만 원)보다 △2억 4,200만원 감액된 9억 8,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3-62〉 20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1,224	6,877	7,119	△242	98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63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계획은 81억 200만원으로 '25년도(87억 5,200만 원)보다 △6억 5,000만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인 바,

43)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수입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9,8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한 1억 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19억 8,700만원)보다 △7억 6,200만원 감액된 12억 2,4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16억원)보다 51억 4,400만원 증액된 67억 4,4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63〉 20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8,102	8,752	△650	
공공예금이자수입	101	98	3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주 1)}	0	0	0	· 기타이자 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	4	△0.5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27	63	△35	· 위탁비 반환수입
예치금회수	1,224	1,987	△762	· 전년도 이월액
기타회계전입금	6,744	1,600	5,144	· 일반회계 전입금
예수금수입	-	5,000	△5,000	· 미편성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66~267) 재구성

주1)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26년도 62만원, '25년도 17만 7,000원을 수입계획함

- 지출계획의 경우,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은 「재해구호법」⁴⁴⁾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여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60억원)보다 △49억 9,400만원 감액된 10억 6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출계획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상환하는 예수금원금상환을 '26년도에 50억원 순증하여 지출계획한 것임

44)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표 3-64〉 20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편 성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타 지 방 자 치 단 체 재 해 · 재 난 구 호 지 원			
합 계	8,102	8,752	△650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6	6,000	△4,994	· 타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6
타 시도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89	277	12	· 타시도연계 MICE 특별지원금 150 · 타시도연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70 · 타시도 공동마케팅 사업운영비 51 · 기타 대행업무 수수료 등 17
랜선나눔캠퍼스 운영				
사무관리비	2	2	-	·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비용 2
기타보상금	460	460	-	· 대학생 활동비 46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	10	-	· 지역상생교류 사업 홍보비 10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4	14	-	· 버스차량 임차비 14
행사운영비	20	20	-	·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0
서울-지역간 우호교류정원 조성				
시설비	300	-	300	· 우호교류정원 조성비 300
여유자금예치 (국내협력계정)				
일반예치금	982	1,224	△242	· 여유자금 예치 982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원금상환	5,000	-	5,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5,000
예수금이자상환 (2026년 1분기)				
예수금이자상환	13	38	△2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1분기) 13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3	3	-	· 위원회 수당 등 3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68~271) 재구성

-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는 **서울·지역간 우호교류정원 조성**⁴⁵⁾하고자 3억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바, 대구, 경기, 충북 충주, 전북 전주 4개소에 각 7,500만원을 지출하여 서울정원을 조성하려는 것임

-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⁴⁶⁾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도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음⁴⁷⁾
-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 '25년 1월, 「협약의 의회 동의 여부 사전점검 매뉴얼」⁴⁸⁾을 수립하여 일부 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사전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 '25년도중 서울시는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우호 교류정원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동의안 4건⁴⁹⁾을 금번 정례회 안건

45) 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22

46)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7)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략)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48)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에 따른- 협약의 의회 동의 여부 사전점검 매뉴얼」 ('25. 1)

○ 이 매뉴얼은 시장 명의로 체결하는 협약 준비과정에서 안내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체결 부서에서는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협약 체결 전 필수사항을 점검하고 의회 동의가 필요한 협약인지 여부에 관한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49) ■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344, ② 제안(시장) : '25.10.18, ③ 회부 : '25.10.23

■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⁵⁰⁾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① 의안번호 : 3345, ② 제안(시장) : '25.10.18, ③ 회부 : '25.10.23

■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346, ② 제안(시장) : '25.10.18, ③ 회부 : '25.10.23

■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347, ② 제안(시장) : '25.10.18, ③ 회부 : '25.10.23

5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5. 4) p.21

2) 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은 투자심사 대상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행위를 의미
-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로서,
 - 미분양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 확약(소위 책임분양), 비용부담 협약 등과 같이 향후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확약·협약을 의미
-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 연장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으로서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13) 국제개발협력기금

- **국제개발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⁵¹⁾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음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26년도말 37억 5,000만원을 조성 계획한 것으로 '25년도말 조성액(29억 5,000만원)보다 8억원 증액된 것임

〈표 3-65〉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2,950	4,558	3,758	800		3,75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77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규모는 75억 800만원으로 '25년도 운용규모(79억 1,100만원)보다 △4억 200만원 감액한 것임
- 수입계획은 연도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를 금년도(30억 9,7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 감액한 29억 5,0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45억 6,4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 감액한 44억 1,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51)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66〉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7,508	7,911	△402	
공공예금이자수입	112	216	△104	·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0.5	0.5	-	·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	8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 탁 비 반 환 수 입	24	24	-	· 위탁비반환수입
예 치 금 회 수	2,950	3,097	△146	·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기 타 회 계 전 입 금	4,412	4,564	△151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80~281) 재구성

- 지출계획은 금년도(79억 1,100만원)보다 △4억 200만원 감액한 75억 8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는 것인 바, 세부사업인 **디자인 서울 글로벌 동행 프로젝트**사업에 7,400만원을 신규 지출계획하고,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 과정**(3억 9,600만원),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10억 1,600만원) 등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67A〉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7,508	7,911	△402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기간체근로자등보수	169	165	4	· 과정당차보수(3명), 초단시간근로자(1명), 시간강사 4대보험료 169
사 무 관 리 비	268	268	△0.3	· 강의료, 건강검진비, 건강보험료 등 268
공 공 운 영 비	0.5	0.6	△0.1	· 우편통신비 0.5
행 사 운 영 비	38	37	1	· 간담회비, 비교과활동 38
국 내 여 비	0.7	0.6	△0.1	· 과정운영 출장비 0.7
외빈초청여비	540	475	65	· 공항교통비, 기숙사비 및 식비 540
외 국 도 시 공 무 원 초 청 연 수				
사 무 관 리 비	53	181	△128	· 교육연수 관련 과정 운영경비 53
행 사 운 영 비	165	46	118	· 국제연수전문가 포함 및 동창생 네트워크 기획 165
외빈초청여비	232	197	34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여비 232
해 외 도 시 철 도 관 계 자 초 청 교 육 사 업				
행 사 운 영 비	20	1	19	· 행사운영비 20
외빈초청여비	45	47	△1	· 항공료, 식비, 숙박비 45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기간체근로자등보수	109	106	2	· 임금, 보험료, 퇴직금 등 109
사 무 관 리 비	138	100	37	· 운영비, 자문비, 강의료 등 138
공 공 운 영 비	0.7	0.7	-	· 우편통신비 등 0.7
행 사 운 영 비	2	1	1	· 회의비, 간담회비 등 2
국 내 여 비	1	0.6	0.6	· 출장여비 등 1
외빈초청여비	143	101	42	· 다과비, 식비, 생활비 등 143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82~289) 재구성

〈표 3-67B〉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7,508	7,911	△402	
개 도 국 소 방 안 전 인 프 라 구 축				
사무 관리비	6	6	-	· 연수운영 사무관리비 6
외빈초청여비	14	16	△2	· 외국공무원 초청 여비 14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130	-	· 소방차량 및 장비 양여 보조사업비 130
서 울 형 O D A 챌 린 지 추 진				
사무 관리비	900	890	10	· 서울형ODA 챌린지 추진(3개 도시) 900
국외업무여비	96	50	46	· 서울ODA챌린지 추진 현지조사 96
민간인국외여비	20	-	20	· 서울ODA챌린지 추진관련 해외 주요인사 초청 20
해 외 도 시 물 품 나 눔				
사무 관리비	50	50	-	· 불용품 정비비, 수리비, 폐기료 등 18 · 물품운송비 통관료, 보관료 등 20 ·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 등 12
스 마 트 시 티 국 제 개 발 협 력				
사무 관리비	210	210	-	· 개발컨설팅 수행 용역 200 · 온라인 회의,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 등 10
국외업무여비	20	40	△20	· 대상도시 국외출장(착수 및 최종보고회 개최 등) 20
디 자 인 서 울 글 로 벌 동 행 프 로 젝 트				
국외경상이전	74	-	74	· 디자인 개발비 49 · 제작 및 운송비 24
외 국 지 방 정 부 재 해 구 호				
국외경상이전	300	400	△100	·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300
여 유 자 금 예 치				
일반예치금	3,750	2,950	800	· 여유자금 예치 3,750
기 금 관 리 비				
사무 관리비	5	5	-	· 위원회 운영비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82~289) 재구성

(14) 도시재생기금

□ **도시재생기금**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⁵²⁾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⁵³⁾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을 재원으로 하여⁵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지를 대상으로 거점공간 매입 및 주민협의체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1) 조성규모

□ '26년도말 동 기금의 조성 규모는 1,018억 5,9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액(760억 7,200만원)보다 257억 8,2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68〉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026년도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76,072	34,441	8,654	25,787	101,859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95

5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5년도 운용계획(1,645억 9,800만원)보다 △540억 8,400만원 감액된 1,105억 1,300만원을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의 경우, 과밀부담금을 금년도(263억 5,000만원)보다 29억 9,200만원 증액된 293억 4,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1,333억 1,900만원)보다 △572억 4,700만원 감액한 760억 7,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으로
- 「수도권정비계획법」 55)에 따라 징수되어 서울시로 배분되는 과밀부담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56)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7)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시재생 기금에 균등하게 세입조치 되어 도시재생기금의 수입계획에 과밀부담금(293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26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과밀부담금(293억 4,2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⁵⁸⁾

〈표 3-69〉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요산출내역
합 계	110,513	164,598	△54,084	
공공예금이자수입	3,575	3,405	170	·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 수 입	1,523	1,523	-	· 과년도 반납정산금
부 담 금	29,342	26,350	2,992	· 과밀부담금
예 치 금 회 수	76,072	133,319	△57,247	· 예치금회수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298~299) 재구성

5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5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이하 생략)

5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이하 생략)

58)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p.152

○ 지출계획의 경우,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은 금년도(885억 1,600만원)보다 △798억 7,100만원 감액한 86억 4,4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은 금년도(760억 7,200만원)보다 △492억 1,200만원 감액한 268억 5,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자하는 **예탁금**은 750억원을 지출계획 하여 제출한 것임

〈표 3-70〉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주요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10,513	164,598	△54,084	
도 시 재 생 기 반 시 설 조 성				
사 무 관 리 비	1	233	△231	· 김포공항 알내 항공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 사업관리비 1
시 설 비	6,870	87,131	△80,261	· 김포공항 알내 항공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 용역비 100 · 다동공원조성사업 용역 공사비 6,282 · 경인선 지역단절 연계구상 용역비 34 · 신성장 EDGE-CITY 조성 방안 수립 용역 454
시 설 부 대 비	13	-	13	· 다동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3
자치단체자본보조	1,760	-	1,760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 카움센터) 1,76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0	10	-	· 심의수당 등 1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26,859	76,072	△49,212	· 여유자금 예치 26,859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예 탁 금	75,000	-	75,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75,0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00~302) 재구성

(15) 관광진흥기금

□ **관광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9)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위기 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비용을 적립하는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① 조성규모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관광업계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계정으로

○ '26년도말 10억 3,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5년도말 조성액(13억 4,700만원)보다 △3억 1,3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3-71〉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 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1,347	41	355	△313		1,033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09

5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관광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은 '26년도에는 13억 8,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5년도 운용 규모(19억 9,200만원)보다 △6억 300만원이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년도(6,8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한 4,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예치금회수**의 경우 금년도(19억 2,3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 감액한 13억 4,7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2〉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388	1,992	△603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41	68	△27	· 공공예금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1,347	1,923	△576	· 전년도 기금계좌 예치금 회수액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12)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세부사업인 **이벤트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은 '25년도 (3억원)보다 △1억원 감액된 2억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며 시금고에 적립하는 **여유자금**인 **예치금**은 금년도(13억 4,700만원)보다 △3억 1,300만원 감액된 10억 3,3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73〉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388	1,992	△603	
이 벤 트 연 계 외 래 관 광 객 유 치 지 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	3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스프링페스타 관광상품화 지원 100 · 서울비비큐페스타 관광상품화 지원 100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				
사 무 관 리 비	150	-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서울시 개최 마이스 행사 참가자 조사 50 · 2026년 운영 중 서울 콜레agues MICE 공급자 기획자 및 주최자 설문조사 50 · 서울시 개최 MICE 행사 경제적 파급효과 5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033	1,347	△313	· 여유자금 예치 1,033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5	5	-	· 기금 관리비 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13~314) 재구성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개관을 위한 대규모 예산수요에 대비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적립하고자 운용하는 계정임

① 조성규모

- 동 계정의 '26년도말 조성액은 60억 9,2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액(58억 9,8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74〉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 성 계 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5,898	193	-	193	6,09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19

② 운용계획

- 동 계정의 '26년도 운용규모는 10억 9,200만원으로 '25년도 운용규모(8억 9,8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한 것임

- 동 계정의 '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만원, **예치금회수** 8억 9,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융자하여 발생되는 **예탁금이자수입** 1억 6,600만원을 수입계획한 것임

〈표 3-75〉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092	898	193	
공공예금이자수입	27	21	6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898	668	229	· 전년도 예치금 회수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66	208	△4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22) 재구성

- 동 계정의 '26년도 지출계획은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적립금**인 예치금을 금년도(8억 9,8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 증액한 10억 9,2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였음

〈표 3-76〉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092	898	193	
서 울 관 광 플 라 자 조 성 적 립 금				
일 반 예 치 금	1,092	898	193	· 여유자금 예치 1,09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23) 재구성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경우, 지난 '20년도에 관련 조례⁶⁰⁾를 제정할 당시에는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5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적립하여 '25년도에 서울관광플라자 건물매입비를 확보하여 관광플라자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6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0.15 시행)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고자 지난 '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⁶¹⁾
-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 변경에 따라 목표 적립금의 변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제로 동 계정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전무하고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조성방안과 함께 존속필요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77〉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누적 적립금 ^{주 1)}	60	147	232	227	229	193	6,092
전 입 금 ^{주 2)}	5,000	-	-	-	-	-	5,000
보 조 금	-	-	-	-	-	-	-
차 입 금	-	-	-	-	-	-	-
용 자 금 회 수	-	-	-	-	-	-	-
예 수 금	-	-	-	-	-	-	-
이 자 수 입	60	147	232	227	229	193	1,092
기 타 수 입	-	-	-	-	-	-	-

주1) 서울관광플라자 관련 누적 적립금

주2)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24) 재구성

6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① 의안번호 : 1903 ② 제출 : '24. 5.27. ③ 의결 : '24. 6.28. (가결)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24.7.15>

(16)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⁶²⁾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72억 9,2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규모 (60억 8,200만원)보다 12억 1,0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78〉 2026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 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6,082	20,217	19,007	1,210	7,29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29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규모는 262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운용규모 (280억 8,900만원)보다 △17억 8,9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것임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기타회계전입금** 36억원, '26년도 만기 도래하는 공무원 주택전세금 융자금 회수수입인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7억 1,600만원, **예치금회수** 60억 8,200만원 등을 수입계획한 것임

62)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3-79〉 2026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26,299	28,089	△1,789	
공공예금이자수입	219	114	105	· 공공예금 발생이자 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81	589	92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716	12,768	2,948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 치 금 회 수	6,082	5,217	864	· 예치금 회수
기 타 회 계 전 입 금	3,600	9,400	△5,800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32~333) 재구성

○ 지출계획중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⁶³⁾ 사업으로 '26년도 운용규모는 190억원으로 지출 계획하여 금년도 운용규모(220억원)보다 △30억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하고, **예치금**은 72억 9,2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80〉 2026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26,299	28,089	△1,789	
공 무 원 주 택 전 세 금 지 원				
민 간 용 자 금	19,000	22,000	△3,000	·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19,000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7	7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7,292	6,082	1,210	· 예치금 7,292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34~335) 재구성

63)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 ① 융자대상 :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
- ② 금리 : 연1% (보증보험 약0.2% 별도)
- ③ 한도 : 1/1.5/2억원(그룹별 차등)
- ④ 지원기간 : 기본2년 (최장6년)

(17)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⁶⁴⁾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⁶⁵⁾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되고 있음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주요 대규모 하수도 사업에 대해 시기별 필요한 하수도 사업의 자금을 지원 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26년도에는 '25년도말 조성액(759억 1,300만원)보다 130억원 증가한 889억 1,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표 3-81〉 2026년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 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75,913	13,000	-	13,000	88,913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41

64)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6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운용계획

- 동 기금은 '26년도에 889억 1,300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한 바,

- 수입 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년도와 동일한 30억원으로 수입 계획하고, 예치금회수는 금년도(921억 2,300만원)보다 △162억 1,000 만원 감액한 759억 1,3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전 입금은 100억원 편성하여 수입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82〉 2026년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88,913	95,123	△6,210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000	3,000	-	. 예치금 원금에 대한 '26년 예금이자(예정)수입
예 치 금 회 수	75,913	92,123	△16,210	. '25년 예치금 회수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000	-	10,000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을 위한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44)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을 금년도(759억 1,300만원)보다 △620억원 감액한 139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여유자금을 융자하고자 **예탁금** 750억원을 신규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3-83〉 2026년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88,913	95,123	△6,210	
예 치 금					
일 반 예 치 금	13,913	75,913	△62,000	· 정기예금 등 자금 운용	13,913
여 유 자 금 예 탁					
예 탁 금	75,000	-	75,000	· 여유자금 예탁	75,0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45) 재구성

(18)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⁶⁶⁾,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7억 2,800만원으로 '25년도말 조성규모(5억 8,1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8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581	333	186	146	72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51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규모는 9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운용규모(9억 2,1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 운용규모(1,7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1,600만원으로 계획하고, **기부금수입**은 금년도(3억 3,700

6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만원)보다 △2,100만원 감액된 3억 1,6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금년도(5억 6,500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한 5억 8,100만 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8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14	921	△6	
공공예금이자수입	16	17	△1	·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기 부 금 수 입	316	337	△21	· 고향사랑기부금
예 치 금 회 수	581	565	16	· 예치금 회수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54)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금년도(3억 2,900만 원)보다 △1억 5,300만원 감액한 1억 7,5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예치금(7억 2,800만원) 등을 지출계획한 것임

-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중 기타보상금의 경우, '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⁶⁷⁾,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기금에 편성하여 지출계획한 것임

6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표 3-86〉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914	921	△6	
고 향 사 랑 기 부 제 운 영					
사 무 관 리 비	30	128	△97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30
기 타 보 상 금	94	101	△6	·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구입	94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	-	50	· 지정기부(인재육성 장학사업)	50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728	581	146	·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728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11	10	1	· 고향사랑기부제 기본운영경비	11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55~356) 재구성

(19)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⁶⁸⁾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843억 3,800만원으로 운용계획한 것임

〈표 3-87〉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 0 2 5 년 도 말 조 성 액	2 0 2 6 년 도 조 성 계 획			2 0 2 6 년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740	83,598	-	83,598	84,33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61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규모는 843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330억 6,000만 원)보다 512억 7,8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2억 9,400만원으로 계획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인 **그외수입**을 금년도(323억 2,000만원)보다 499억 8,300만 원 증액한 823억 3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며, **예치금회수**를 7억 4,000만 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표 3-88〉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84,338	33,060	51,278	
공공예금이자수입	1,294	740	554	.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그 외 수 입	82,303	32,320	49,983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예 치 금 회 수	740	-	740	. 예치금 회수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64)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 기금 여유자금인 예치금을 금년도(7억 4,000만원)보다 835억 9,800만원 증액한 843억 3,8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89〉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편 성 목				
합 계	84,338	33,060	51,278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84,338	740	83,598	.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65) 재구성

(20)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구입기금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구입기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용되고 있음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25년도말 조성액(6,300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된 1억 500만원을 조성계획한 바,

〈표 3-90〉 2026년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액		
63	1,042	1,000	42		10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71

- 기금이 설치된 '22년도 이후 '27년도까지 총 500억원의 조성규모를 설정하고, 연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⁶⁹⁾ 당초 '26년도 목표 조성계획액(63억원)대비 실제 '26년도 조성계획액(10억 4,200만원)이 △52억 5,800만원 감액 계획된 것으로 확인됨⁷⁰⁾
- 이는 서울시의 현재 세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의 연간 조성계획을 수립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 기금운용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부서는 실제 조성가능한 규모를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9) 서울특별시, 박물관과-24200 ('22.7.15.)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계획”

70) 서울특별시, 박물관과-10480 ('25.10.17.) “2025년 제2차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표 3-91〉 연도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50,000	22,400	8,800	8,100	6,300	4,400
전입금	전 입 금	46,800	22,300	8,300	7,400	5,400
자 체 재 원	기 부 금	1,450	50	200	300	400
	기금운용수입	1,750	50	300	400	5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과-10480 ('25.10.17.) “2025년 제2차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규모는 11억 500만원으로 금년도(10억 7,100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하고 있는 바,
- 수입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만원, 예치금회수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임

〈표 3-92〉 2026년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105	1,071	34	
공공예금이자수입	42	20	22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63	51	12	· 25년도 예치금 회수금
기 타 회 계 전 입 금	1,000	1,000	-	· 일반회계 전입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74) 재구성

○ 지출계획은 4개 시립기관⁷¹⁾의 소장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9억 3,400만원, **여유자금 예치** 1억 500만원, **기금관리비** 8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93〉 2026년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105	1,071	34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사 무 관 리 비	57	57	-	· 소장품 구입관리를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부대경비	57
자산및물품취득비	934	942	△8	·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934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05	63	42	· 여유자금 예치	105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8	8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75~376) 재구성

7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21) 주택진흥기금

□ **주택진흥기금**은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26년도에 1,918억 8,600만원을 운용하여 '26년도말 179억 2,3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3-94〉 2026년도 주택진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 성 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액		
-	191,886	173,962	17,923		17,923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81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6년도 운용규모는 1,918억 8,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 수입계획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인 배당금수입 418억 8,600만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등인 정부 기금 3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예수금수입 1,200억원을 수입계획한 것임

〈표 3-95〉 2026년도 주택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합 계	191,886	-	191,886	
배 당 금 수 입	41,886	-	41,88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기 금 (국 고 보 조 금)	30,000	-	30,000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예 수 금 수 입	120,000	-	12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84) 재구성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652억 4,1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501억 2,400만원),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250억원), 여유자금인 예치금(179억 2,300만원) 등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3-96A〉 2026년도 주택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91,886	-	191,886	
여 유 자 금				예 치
일 반 예 치 금	17923	-	17923	· 여유자금 예치 17,923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수 금 이 자 상 환				
예수금이자상환	2289	-	228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289
기 금 관 리 비				
사 무 관 리 비	7	-	7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회의 운영경비 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85~388) 재구성

〈표 3-96B〉 2026년도 주택진흥기금 주요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 0 2 6	2 0 2 5	증 감 액	주 요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합 계	191,886	-	191,886	
계 획 적 소 규 모 주 택 정 비 사 업 지 원				
민 간 용 자 금	8,000	-	8,000	· 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8,000
임 차 인 보 호 를 위 한 미 반 환 보 증 금 선 지 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8,300	-	18,300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미반환보증금 선지원 18,300
민 간 임 대 주 택 공 급 활 성화				
사 무 관 리 비	77	-	77	· 민간임대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77
이 차 보 전 금	28,658	-	28,658	· 청년안심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기존) 16,152 · 청년안심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신규) 10,000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 2,505
민 간 용 자 금	36,506	-	36,506	· 토지매입비 증순위 대출 지원
청 년 안 심 주 택 S H 선 매 입				
공 사 · 공 단 자 본 전 출 금	30,000	-	30,000	· SH 선매입 30,000
출 자 금	20,124	-	20,124	· SH 선매입 20,124
주 택 정 비 사 업 용 자 금 지 원				
민 간 용 자 금	25,000	-	25,000	· 주택 정비사업 용자금 25,000
재 정 비 촉 진 사 업 용 자 금 지 원				
민 간 용 자 금	5,000	-	5,000	· 재정비촉진사업 용자금 5,0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385~388) 재구성